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관련 품질 및 사후관리 규정

2024.3.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음식물처리협동조합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조합원의 수주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성실한 공공계약의 주체로 성장해 가기 위하여 납품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한편,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조합은 이에 미달하는 조합원의 경쟁입찰 참여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통한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의 성질, 특성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한 경쟁입찰 참여 제품의 숫자를 제한하는 등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

제3조(생산관리 및 품질향상반 운영) ① 조합은 조합원의 품질향상 지원을 위하여 상근이사 등을 반장으로 하는 품질향상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합으로부터 경쟁입찰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은 생산공정 등을 포함하는 배정물량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반은 납품 전 1회 이상 배정업체에 대하여 공정진행 상황 및 적정품질제품 생산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생산·납품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최종 적정납품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등 품질향상반의 활동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관리) 조합으로부터 경쟁입찰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은 납품제품의 품질 유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납품제품에 생산 회사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조합은 납품이후라도 납품제품의 활용 및 가동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조합은 납품제품의 품질저하 및 하자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A/S 등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사항에 따라 수리·보완·교체 등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향상교육) ① 조합은 조합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품질관리 전담책임자 등 경쟁입찰 계약관련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경쟁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출액의 1%이상을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품질향상교육 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참여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배정물량의 하청생산·납품, 완제품 구입납품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주무관청 또는 중앙회로부터 실태조사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관련 정보관리) 조합은 계약정보, 경쟁입찰 물량배정 현황 및 품질하자 발생현황 등을 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 보고) 조합원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경쟁입찰에 참여한 횟수와 물량 수주현황 및 품질하자 발생현황 등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경쟁입찰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의·경고·독촉·계약해지 등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가 확정된 조합원은 새로운 소명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간수요시장 참여) ① 조합은 민간수요시장에 입찰 또는 협약 형태로 참여하여 조합원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② 민간수요시장에 참여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되,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